

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신청자격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 - 신청기한 :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 - 지원내용 :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 - 지원제외 대상 입원·격리자
 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·격리자
 - 해외입국 격리자
 -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 -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 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
 - 신청서류
 -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③ 신분증*
 - ④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(직장가입자) ⑤ 입원·격리통지서(통지서, 문자 등)
- 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※ 문의 :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(☎061-390-7306)